



# 학교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 신청하세요!

학교안전사고 부상으로 인한 피해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제급여의 종류

<b>요양급여</b>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	<b>장해급여</b>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 종료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b>간병급여</b>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요양)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b>유족급여·장의비</b>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b>위로금</b> 교육활동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급여 종류별 산정 기준에 따름

## 공제급여의 종류 중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하시는 '요양급여' 치료 비용 청구 방법

<b>① 학교안전사고 발생</b> (학교장은 지체없이 사고 통지)	<b>② 피공제자 및 청구인은 치료 완료 후 (또는 중간) 청구 서류 준비</b>	<b>③ 청구서 작성</b>	<b>④ 공제회로 서류 제출</b>	<b>⑤ 심사</b>	<b>⑥ 지급 및 결과 통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통지는 공제가입자인 <b>학교장</b>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공제회로 통보</li> <li>통지방법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사고 등록 및 통보</li> <li>※ 통보 시 결재완료된 학교안전사고 발생신고서 파일 첨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li> <li>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li> <li>진료비 세부명세서 [원본 또는 사본, 비급여 진료항목이 없는 경우 생략]</li> <li>청구인[학부모] 통장 사본</li> <li>청구액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 등본] [원본] 추가</li> <li>※ 지급여부 결정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구인이 청구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실 경우 : 학교에서 '공제급여청구서'작성 후 학교장 직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li> <li>청구인이 청구서류를 공제회로 직접 제출하실 경우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또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li> <li>(청구서 양식 전자메일, 팩스, 우편으로 요청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 ③ 서류를 취합하여 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제출</li> <li>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치료 완료 또는 치료 중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li> <li>※ 공제급여청구권의 소멸 시효 → 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li> <li>(필요 시 연장 및 서류 보완 요청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 결정 후 청구인에게 입금</li> <li>▶ 공제회에서 학교장에게 공제급여결정통보서 발송 ▶ 학교장은 청구인에게 전달</li> </ul>

## 요양급여(치료 비용) 지급 범위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

구분	급여		비급여
요양급여 지급 대상 여부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일부 항목 지급
	지급대상		

- 급여**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항목
- 일부지급**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규정된 항목
- ※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납부한 비용 중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로 잘못 기재된 경우가거나, 세부기준에 따라 일부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 응급중상이 아니거나, 휴일 및 야간에 일어나지 않은 사고로 내원한 응급실의 응급의료관리료)

[별표]

구분	치료 항목 및 한도				
치아 보철 (한 대당)	보철	400,000원 한도 (2회 인정)			
	레진	120,000원 한도 (1회 인정)			
	포스트	124,000원 한도 (1회 인정)			
	임플란트	2,000,000원 한도(1회 인정) 단, 일반 보철 불가한 경우			
자기공명영상 (MRI)	1회 인정	무통제	인정	흉터 제거술	1회 인정
초음파	인정	물리치료 (예 : 도수,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등)		불인정	

- 비급여 항목 중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 항목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서류준비 단계에서 문의 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공제급여 지급 제한 사유

자해 및 자살, 의료기관의 치료지시 거부 및 방해, 가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지 않은 질병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28546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TEL. 0431252-7109 FAX. 0431253-0177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http://www.schoolsafe.or.kr/>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 <http://chungbuk.ssif.or.kr/>